



# 규정

## 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

문서번호	TWP-A705
제정일자	2016. 12. 23.
개정일자	2018. 02. 19.
개정번호	2
페이지	1/4


### 목 차

부 칙

작성부서	기획홍보처	제정일자	2016. 12. 23.
------	--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승 인
		직 책	담 당	교무처장	사무처장	
서 명						
일 자						



	<b>규정</b>		문서번호	TWP-A705
			제정일자	2016. 12. 23.
	<b>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</b>		개정일자	2018. 02. 19.
			개정번호	2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의 대학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품질개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7.02.28.>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이 대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대학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정한다.<개정 2017.02.28.>

**제3조(위원회)** ① 대학품질개선 운영을 위하여 대학품질개선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7.02.28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당연직 내부위원은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산학협력처장, 사무처장, 학생취업처장으로 한다.<개정 2017.02.28., 2018.02.19.>

③<삭제 2017.02.28.>

④ 임명직 내부위원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임명하며, 외부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1인 이상 총장이 위촉한다.<개정 2017.02.28.>

⑤ 간사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<개정 2017.02.28.>

**제4조(위원회 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 경영 및 교육품질 향상을 위한 대학품질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2.28.>

2. <삭제 2017.02.28.>

3. 연도별 부서 및 학과의 성과지표 등 운영성과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<개정 2017.02.28.>

4. 각종 만족도 조사결과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사항

5. 기타 교육품질 개선과 환류에 관한 사항


**제5조(회의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. <개정 2017.02.28.>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 2017.02.28.>

③ 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되, 위원장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<개정 2017.02.28.>

**제6조(운영부서)** 이 규정에 의한 대학품질개선 업무는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 다만, 총장은 필요에 따라 대학품질개선 운영 업무를 달리 위임할 수 있다.<개정 2017.02.28.>

**제7조(기타)** 대학품질개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 <개정

	규정	문서번호	TWP-A705	
		제정일자	2016. 12. 23.	
	대학품질개선 운영 규정	개정일자	2018. 02. 19.	
		개정번호	2	페이지

2017.02.28.>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